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홍승아 선임연구위원 (Tel:02-3156-7149 / e-mail:hongsa@kwdimai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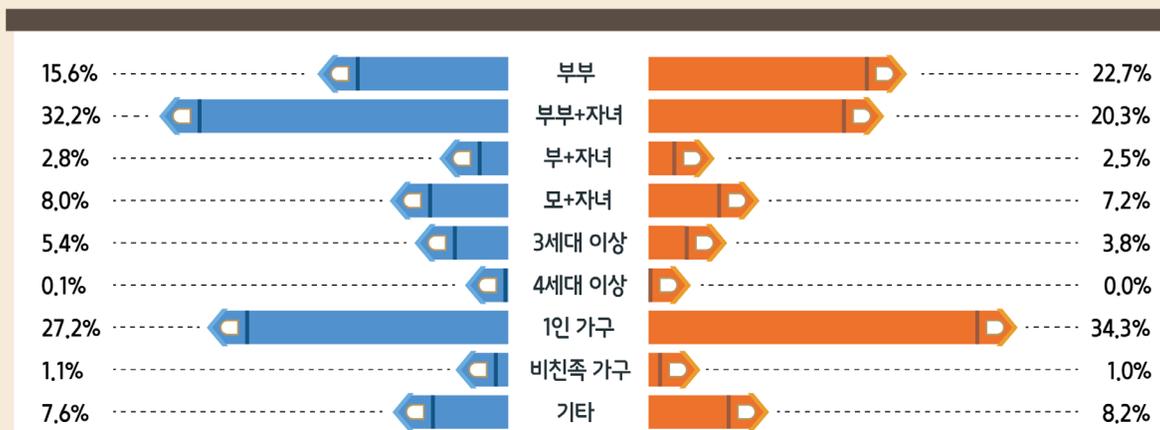
가족의 미래변화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가족 다양성 증가에 대응하여 가족간 차별이나 가족유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적 가족관 형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필요. 나아가서 다양한 가족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족정책 수립 ”

다양한 가족의 증가

가구유형별 가구비율 변화

- 2035년 부부+자녀가구(20.3%)는 감소하고, 1인가구(34.3%) 및 부부가구(22.7%)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형적 가족형태 외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국제 결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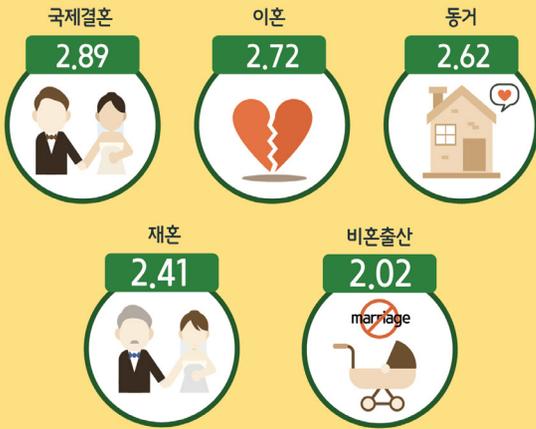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6) 2015 인구주택총조사(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자료: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수용도: 30대

- 국제결혼, 이혼, 재혼, 동거 등에 대한 수용도 높아지고 있음(특히 30대)
-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포용적 가족관 형성과 사회문화 조성이 중요



· 주: 4점척도로 평균하였음(점수가 높을수록 허용도 높음)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4

포용적 가족정책과 정책방향

포용적 가족정책: “가족구성, 가족형태,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에 태어난 모든 출생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것”



1. 배경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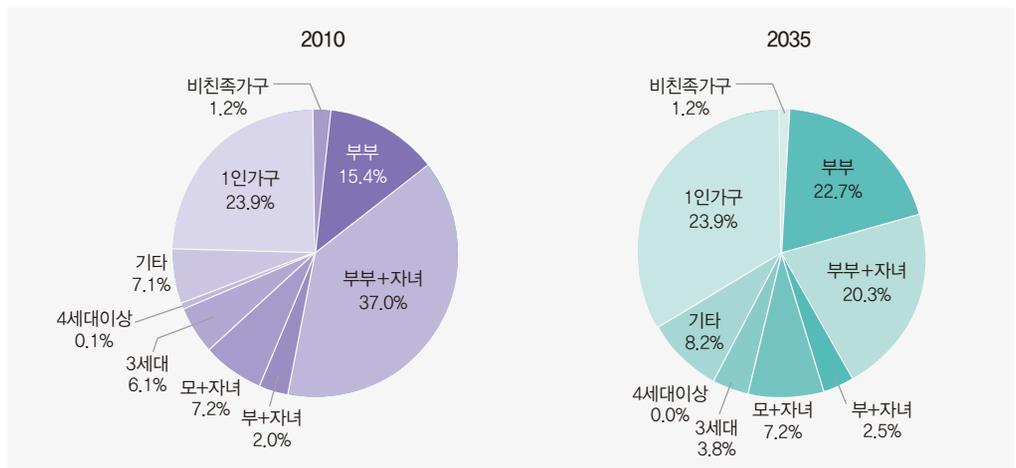
- ① 우리사회 가족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 지금까지 전형적인 가족모델로 생각되고 있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동시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이혼 및 재혼가족,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② 동시에 가족가치와 가족관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의 구성과 형태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택과 기획에 의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가치도 감소하고 있음.
- ③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족형태 다양성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1. 가족변화와 가족형태 다양성의 증가

☞ 우선, 가족의 형태별 분포 추이 및 전망을 보면 핵가족은 여전히 전체 가족의 일반적인 모습을 띠는 가운데 핵가족 내부 구성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비중은 여전히 전체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크게 감소하고 있음. 대신 부부가구의 비율이 1990년 9.3%에서 2015년 21.8%로 크게 증가하였고,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도 1990년 8.7%에서 2015년 15.0%로 증가하였음(통계청, 2010, 홍승아 외, 2015a: 49~55에서 재인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1] 가구유형별 가구 구성(2010, 2035)



자료: 통계청(2012), 홍승아(2016), p.2에서 재인용

☞ 가족구성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한편으로는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형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제도에 편입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음. 즉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가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과 기획에 의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우선,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에는 평균 결혼연령이 남성 29.3세, 여성 26.5세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5년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32.6세, 여성 30.0세로, 남녀 모두 “30대 결혼” 연령시대로 접어들었음(통계청,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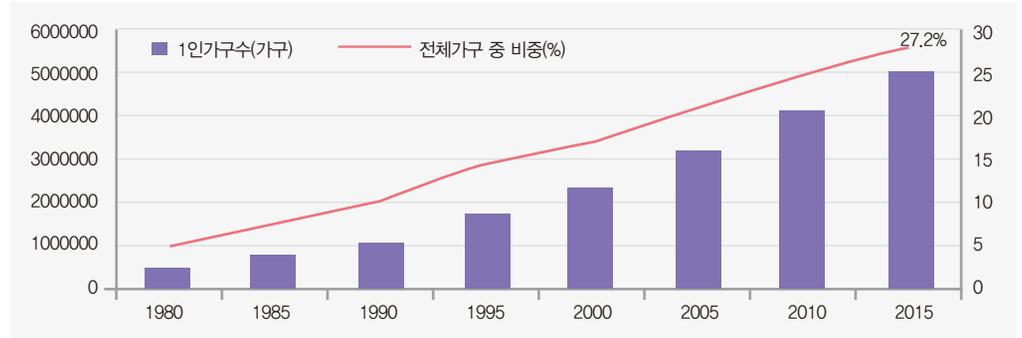
[그림 2]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4)



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의 응답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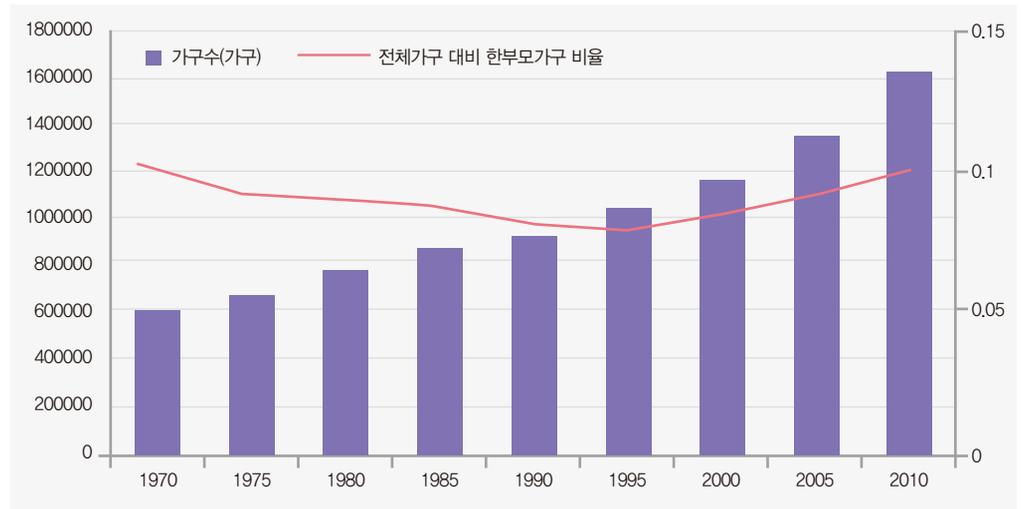
- ④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1인가구의 증가 현상임. 1인가구는 1980년에는 전체 가구 중 4.8%, 1990년 9.0%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5년 전체 가구 중 27.2%를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통계청, 2012, 통계청, 2016) 가족의 변화 중에서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정책적 대상이 되고 있음.

[그림 3] 1인가구 변화추이



- ④ 한부모가족은 지난 15년간 증가추세였으며, 향후 급속하게 증가하기보다는 현재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2000년 7.8%에서 2010년 9.2%, 2020년 9.7%로 전망됨(통계청, 2012; 홍승아 외, 2015a: 52에서 재인용).

[그림 4] 한부모가구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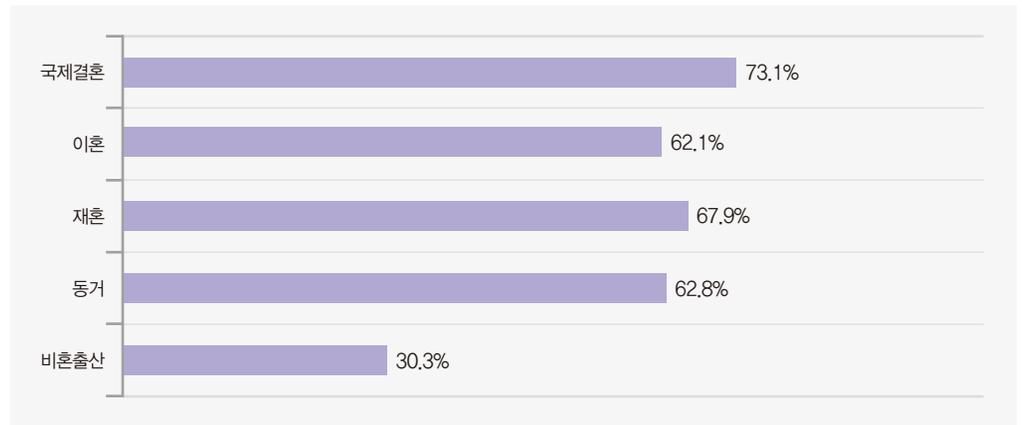


- ④ 다문화가족수는 2007년 328,000명에서 2015년 818,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혼인 건수 중 다문화가족 결혼의 비중은 2008년 11.2%에서 2010년까지 전체 혼인 중 10%를 유지하다 최근 들어 8.0%수준(2014년)으로 떨어졌음. 다문화가족의 출생자녀수도 2008년 2.9%에서 2014년 4.9%로 증가하였음(여성가족부, 2015).

- ④ 한편,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1993년 전체 혼인 중 1.6%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3.5%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였음.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전체 혼인 중 7.0%를 차지하고 있음(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15).

- ④ 재혼의 경우, 1990년에는 전체 혼인 중 재혼의 비율이 10.7%에서 2015년 현재 21.4%로, 즉 전체 혼인 중의 약 1/5이 재혼으로 나타남. 재혼가족의 증가 속에서 이들의 자녀 양육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됨(통계청, 2013, 통계청, 2015).
- ④ 또한 가족가치관에 있어서도 결혼, 이혼, 재혼, 국제결혼, 동거 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수용도가 변화하고 있음.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에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변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포용적 가족관 형성과 사회문화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그림 5]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수용도: 30대



프랑스의 가족변화와 정책대응

- ④ 프랑스는 일찍부터 가족변화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을 사회적으로 포용해 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
 - ▶ 1970년대에는 이혼의 자유가 확대되고 결혼제도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동성애와 동성애커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 1990년대에는 좌파 의원들이 새로운 형태의 시민협약을 도입하기 위해 꾸준히 관련법 제안을 해왔음.
 - ▶ 1999년 시민연대협약(PACS)을 도입하여 새로운 가족형태로서 동거계약형태를 수용하게 됨. 다른 동거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미혼자이면서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임. 성인 간의 동거관계에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세금납부, 상속세 감면, 전세·매매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 ▶ 1999년 팩스 법 제정 이후 커플 구성의 세 가지 형태-결혼, 팩스, 동거-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민법의 경우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거는 '두 성인 간의 사실혼', 팩스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두 성인 간의 계약'으로 정의되고 있음(Haut conseil de la famille, 2011: 107). 이 세 가지 형태의 커플구성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01 팩스로 맺어진 두 사람이 법적으로는 독신의 지위를 유지 (배우자로서의 지위는 민법상 지위는 아님)
- 02 결합 후 배우자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부부간 정절의 의무도 없음
- 03 팩스 협약을 체결하면 단순 동거에 비해 세제상(소득세, 재산세등)의 이점이 있으며, 의료보험도 파트너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04 계약관계 해지 시에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 05 결혼과 달리 유언장이 없이는 상속권이 생성되지 않음

3. 정책제언

3.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 ④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기구의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우선 정부가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사회적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과 다양한 민간이 주체로 참여하면서 각자의 다양한 권리와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해결 방식을 도출해 내는 민간주도형 방식이 있음.
- ④ 사회적 기구에서 다루는 가족이슈는 다음의 두가지로 제안할 수 있음. 첫째, 본 연구의 제목에서 제시되었듯이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편견의 문제에 초점을 둔 사회적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임. 둘째, 가족형태 다양성의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가족의 변화와 새로운 가족정책과 가족문화를 견인해 낼 수 있는 가족문제 전체를 포괄적인 범주로 아우르는 사회적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임.
- ④ 사회적 기구는 정부, 시민단체, 종교단체, 전문가, 언론계, 다양한 이해당사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중앙 및 지방의 관련 공무원들은 정책수립과 집행의 주체로서 사회적 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한부모, 다문화, 이혼가족, 재혼 가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여 본인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시민사회와 종교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가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편견 및 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이 가능함. 언론계는 가족변화와 관련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전사회적인 대중홍보와 정보제공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④ 사회적 기구의 명칭은 우선적으로 가족소통위원회(혹은 연대), 가족평등위원회(혹은 연대), 가족포용위원회(혹은 연대), 미래가족위원회, 가족차별개선위원회(혹은 연대) 혹은 가족포럼, 가족네트워크 등으로 제안할 수 있음.

④ 이상의 방식으로 기구를 구성한 뒤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추진방안을 제안함.

- ▶ 첫째, 포용적 가족관 수립과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아젠다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에서는 현재의 가족변화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바탕 위에서 필요한 아젠다를 도출하는 과정이 요구됨.
- ▶ 둘째, 가족 다양성 관련 안건을 주요 주제로 하는 의제의 설정과 대표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제 중에서 중요도와 시기, 순서 등을 고려하여 주요의제를 설정하고 이들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대표기구를 마련함.
- ▶ 셋째, 사회적 기구의 구성과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팀을 마련함. 실무팀의 구성은 다시 세부주제에 따라 필요한 팀으로 구성하게 될 것인데(예; 의제별 위원회), 예를 들어서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족으로서의 삶, 자녀양육, 경제생활, 일·가정양립, 지역사회 참여 등의 주제들을 제안할 수 있음.
- ▶ 넷째,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법, 제도의 개정을 제안하고 권고안을 제안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 ④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입양부모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가족생활 지원
- ④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적 출생아에 대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 지원
- ④ 다양한 가족에 대한 고용, 소득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차별 해소
- ④ 다양한 가족의 가족법상의 권리 보장
- ④ 저출산 대책에 효과적 기여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아동권리과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